

KT노보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KT노동조합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허진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청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길경(02-2272-7114)

8대집행부 3년, 노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02년 조합원의 암도적인 찬성을 통해 출범한 8대 당당한 노동조합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왔다. 8대 집행부는 '당당한 노동조합'이라는 기치 아래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특히 대학생 자녀 장학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숙원을 해결하고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문제 등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문제에서부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까지 광범위한 활동은 이후 조합활동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의 8대 집행부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이후 집행부의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복지

1)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재학생 및 상환도래자에게 75% 지원키로 함.

① 지원대상

(용어 정의)

- 재학생 : 장학금 지원제도 시행일 기준 재직증인 직원 자녀
- 상환도래자 : '99년 이후 학자금 대부자로서 2003년 3월 이후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고 재직증인 직원 (대상자녀 및 지원횟수)
- 직원 1인당 2자녀 한, 1자녀당 최대 8학기

② 지원수준 및 지급방법

- 재학생 : 납부금액의 75%를 납부월 또는 익월에 지급
- 상환도래자 : 매월 상환액의 75%를 매월 급여일의 일지급

③ 기타사항

- 상환도래자 중 퇴직자 지급 : 퇴직시점에 일시 지원을 원칙
 - 대학교 인정범위 :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학점 인정대학
- * 국외 대학생의 경우 연세대 유사계열 유사학과의 75% 지원

2) 직장단체보조

- 재해사망(8,000만원) : 단체보험 약관(질병을 포함한 일반사망 제외) 적용
- 일반사망(8,00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 재해장해(최고 2,500만원) : 보험사 등급기준 적용(1등급~6등급)
- 임진단(1,500만원) : 계약기간중 전이에 관계없이 타부위 발생시마다 보험금 지급

3) 유치원보조비

- ▲ 지급대상: 직원의 혼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아(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

▲ 신청방법: 학원, 유치원, 기타 교육단체에 교육위탁 입증자료(연1회 제출)

만5세가 도래하는 기준일(3월 1일) 1회 신청(복지기금 신청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올해 적용 대상자: 2005. 9. 1 신청자는 10월 말까지 신청

내년 신청자: 2006. 3월 ~ 8월 31일까지 신청

▲ 지급방법: 년 4회 매분기별 지급 (6,9,12,3월 급여일 별도 계좌 지급)

▲ 지급제외: 회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위탁 자녀는 제외 (본사/분당/복동/고양: 이미 회사지원금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

- 부부사원 중 1인만 지급

4) 주택자금대출

① 주택자금 확대

- 가) 대부금액은 마련 5,000만원 / 임차 3,000만원으로 확대
- 나) 3,000만원까지는 현 보증제도 유지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증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 다) 기임차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부 가능

② 주택자금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운영세칙 제41조)

-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항목 삭제
- 나) 무주택기간 변경 : 무주택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근속기간은 현행대로 3년유지)

③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방법 선택권 부여 (운영세칙 제47조)

- 가) 당초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의무 →변경 거치여부 본인 선택
- 나) 거치기간 없이 상환방법을 선택경우 : 이자부담 경감(연3.8%)
- 마련자금 삼천만 대부시 : 1년 이자 경감 1,140,000원
- 임차자금 이천만 대부시 : 1년 이자 경감 760,000원

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연도별	출연액
1992~1998	636
1999	650
2000	228
2001	500
2002	500
2003	1,000
2004	500
2005	500
합계	4,514

<단위: 억원>

임금

- ① 2003년 · 기본급 2%인상, ESOP 22주, 월드패스카드 50만원

- ② 2004년 · 총액대비 2% 인상, 월드패스카드 50만원

- ③ 2005년 · 기본급 3% 인상, 특별성과급 100%, ESOP 출연 1인당 60주 지급

제도

1) 우리사주 활성화

- ① 우리사주 지분확대

- 2003년 : 직원 회사 1:1 출연방식으로 22주 균등배분

- 2005년 : 조합원 1인당 60주 지급

- ② 우리사주를 통한 주요활동

- 2003년부터 사회이사 추천

- 한국기업 최초로 집중부표 실시

- 현대증권노동조합과 연대해 의결권위임운동을 펼침.

2) 노사대토론회

- ① 2004년 노사대토론회: KT 미래비전 · 조직개편 문제 및 개선방향 ·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향

3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비판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한 마디로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변하지 않는 노동정책의 기조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부당해고에 대한 사측 책임 면제 등 신자유주의 기조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외

1) IT연맹 침립

2004년 7월 30일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 전국IT산업 노동조합연맹은 IT산업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며 나아가 이땅의 모든 노동자 민족과 연대할 것을 전명했다. 현재 연맹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KT노동조합을 비롯 4개의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금문제, 통합운영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2) 동아시아통신노조 포럼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대표적인 통신노동조합이 매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부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03년에 제주에서 1차 포럼을 시작해 대만에서 열린 2004년 포럼에서는 WTO 및 DDA 등 신자유주의 개방 불경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2005년은 일본 고베에서 기술혁신과 고용변화라는 주제로 논의한 바 있다.

기타

1)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투쟁 전개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경영평가 매출액에서 제외)
- 지역본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
- 시장관리팀 소속 판매전담요원 차별 철폐

유아교육보조비 지원제도 안내

KT 노동조합

□ 지급대상

- 대상시원 : 취학직전

(지급년도 3월 1일 기준 만5세 도달) 자녀를 둔 사원

- 예시 : 2005년도 1999.3.1~2000.2.28사이 출생자녀

- 자녀기준

- 사원의 혼적에 등재된 자녀

- 이혼한 여직원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 지급기준

- 대상자녀의 수 : 제한 없음

- 지급금액 : 대상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보수지급일에 해당 분기별(6,9,12,3월) 정액지급

- 지급기간 : 최장기간 1년

- 지급년도 산정 : 매년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 지급제외

- 대상자녀가 KT직장보육시설 수혜를 받는 경우

- 부부사원의 경우 1인만 지급

□ 지급신청

- 신청서류

① 유아교육보조비 지급신청서(별지서식: 시스템 보안종)

② 교육(보육)시설에 납입한 영수증 또는 재원증명서

* 교육(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

-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 학원의설립 · 운영및교육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학원, 교습소

- 기타 교육시설

○ 신청기한 :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 1회

* 2005년도 신청 : 2005.11월말까지

○ 신청방법

- 전산입력 : e-HRM시스템

(유아교육보조비 화면추가 9월말 예정)

- 신청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 시행일 : 2005.9.1

조직개편, 지사·고객서비스 통합 긍정적 평가

노동조합, 네트워크서비스까지 포괄한 통합 이뤄져야



지사와 영업의 통합이 이뤄졌다. 회사는 고객점점 채널 간 유기적 협조 미흡으로 시너지 확보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과도한 기능 분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장조직을 마케팅과 네트워크 2개 기능으로 재편한다고 말했다.

되돌아보자. 2003년 회사는 전문성 강화 및 직무중심의 편제를 위해 영업/고객서비스/망운용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직개편 효과로 상품강매 부담 해소, 전문화된 교육체계 도입, 명확한 책임조직운영,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위적 구조조정 방지, 전문인으로 직원 경쟁력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사·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업·영업의 도움이 없어 스스로 NCI(Network Consultant) 활동을 벌이는 망·전송분야를 두고 인력분할손에 허덕이는 지사. 이것이 KT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노동조합은 노사대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영업·지사·망 모두 인력분할손과 부서간 갈등 문제를 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2003년 노사대토론회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사

와 영업·망이 통합된 광역국체계로의 회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문제점을 분석하기보다는 과정상의 문제로 치부하는 등 주상적인 낙관주의 빠져있었다. 더군다나 기존 전화국의 이름을 버리고 2004년에는 BSC, CSC, NSC라는 매우 생소한 명칭으로 변경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측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연이어지는 노사대토론회와 단체교섭 등 노사간 만남의 장이 있을 때마다 이문제를 지적했으며 회사측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드

디어 2005년 단체교섭에서 조직개편의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과거 광역국체계를 대안을 내세우면서 영업·지사·망운용국의 한지붕 3가족을 다시 한가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통합의 방향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네트워크서비스센터까지 포괄한 광역국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2005년 단체교섭> 합의안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7월 1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실무 소위원회 4회,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4회, 사내근로복지 기금협의회 3회, 노사관계개선협의회 3회를 진행하였다.

2. 2005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임금분야

기. 기본급 3% 인상, 특별성과급 100%, ESOP 출연 1인당 60주 지급

<해설>

1) 교섭

회사는 현 경영의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동결 주장과 회망직원 연봉제 도입 확대 및 직급별 승진제한 후봉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2004년도 조합원의 정당한 노력으로 달성된 매출목표의 성과를 요구하여 어려운 여건속의 합의.

2) 특별성과급 237.79% 효과 발생(5급 10호봉 기준)
특별성과급 100%와 1인당 60주(7/28일 종가 기준 43,550원 설정)는 성과급 137.79%의 효과가 발생되어 전체적 237.79%의 특별성과급을 확보.

3) 우리사주지분 확대 : 위원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노동조합의 장기사업 중 하나인 경영참여를 위해 지분 확대는 꾸준히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한후에도 지분 확대를 통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지급방법 및 기간

기본급 3%의 인상 소급분: 9월 지급예정, 별도통장의 환동에 적용(도휴기비 등)되는 부분은 별도통장 지급

특별성과급과 1인당 60주: 11월 지급예정, 3년의 임무보유기간 적용

5) 기타

<자사주 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의무에 따른 기간내 인출 가능 조건>

1. 우리사주조합 해산

2. 우리사주조합원 사망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발생

4. 우리사주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5.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6. 2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복지분야

가. 유아교육보조비:

초등학교 취학직전 자녀 1년 동안 10만원/월 정액 지급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아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

2) 시행시기: 2005년 9월 1일부터

3) 신청방법: 학원, 유치원, 기타 교육단체에 교육위탁 입증자료연 1회 제출

만 5세가 도래하는 기준일(3월 1일) 1회 신청(복지기금 신청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올해 적용대상자: 2005. 9. 1신청자는 10월 말까지 신청

내년 신청자: 2006. 3월 ~ 8월 31일까지 신청

4) 지급방법: 년 4회 매 분기별 지급 (6.9.12.3월 급여일 별도계좌 지급)

5) 지급제외: 회사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위탁 자녀는 제외 (본사/분당/북동/고양: 이미 회사지원금 10만원과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부부사원 중 1인만 지급

나. 복지기금 출연: 500억원 기금 출연

1) 출연시기: 2005. 9월

2) 운영현황: 기금 보유자산 3,415억원(주택자금 대부 1,551억/ 금융에 투자 1,864억원)

다.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 도입

<해설>

▼출연현황(단위: 억원)

연도별	출연액
92~98	636
1999	650
2000	228
2001	500
2002	500
2003	1,000
2004	500
합계	4,014

1) 기념품 지원 항목(생일, 창사, 노조창립, 노동자의 날) 중 지원 항목 도래되는 시점에 본인의 선택하여 일괄 지급 신청 또는 나뉘어 선택적정(1인당 연간 20만원)

2) 회사에서 주장하는 포인트(Point)제도와는 다름.

3) 복지기금으로 지급되지만 소요되는 재원은 회사가 별도 출연

4) 도입배경: 현 복지기금 운용금액은 출연 액의 50% 만 사용토록 돼 있음.

향후 2007년부터 대학교 장학금 상환자 급등으로 복지 사업비 50% 규정으로는 도저히 지급이 불가하여 80%로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항으로 50%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변경키로 하였으며 선택적 조항으로는 기념품 4종의 선택만 제한하였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19조 ④ 항 1호 -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행일: 2006년 1월부터

단체협약 분야

가. 불임휴직 신설 및 근속기간 삽입

<해설>

1) 단체협약 제27조(육아휴직)에 신설 신설

④ 항으로 불임여성조합원은 자녀 출산을 위해 의사진단서(시험관 출산)를 제출하고 1년간 무급불임휴직을 신청

2) 자녀의 출산을 위해 불임고통을 받고 있는 소수의 여성 조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조항으로 도입

3) 불임휴직이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산정함으로 퇴직 시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퇴직승급에 불이익을 제거

나. 육아휴직제도 개선: 생후 1년미만의 영아 → 생후 2년미만으로

<해설>

1) 산전, 산후 휴가 최대 90일로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의 휴직조항 제한으로 1년 중 90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운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개선된 조항으로 산후조리에 필요한 1년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영아와 산모 모두 건강한 보육을 선

다. 급여공제 항목 추가: 주택자금대부금 및 상환학자금대부금

<해설>

1)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14일내에 지급하고 주택자금 및 상환학자금 미상환 금액을 받고 있지만 일부 물지각한 퇴직자에 의해 상환금액을 미환수 문제시함 발생

2) 단체협약 조항으로 명시시켜 퇴직 시 퇴직금에 우선 공제되는 사안으로 미상환 손실액을 사전 차단

라. 퇴직금 지급 특례 조항 삭제 및 재해보상 조항 수정

<해설>

1) 2004. 12. 28 직장단체보험 가입(일반사망 시 8천만 원 지급 등)으로 인한 충분 수혜부분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여 제51조(퇴직금 지급의 특례)를 삭제하고 제79조(제해보상) 중 ①항만 유지

2) 제51조 1항의 퇴직금 30%의 가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유지

2. 퇴직금 100% 가산금은 사망 시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될 시 지급기준(2004. 12. 28)

3) 제79조(제해보상) 단서 조항 중 산재법의 요양비 조과금액의 보전은 현행 사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지

마. 제58조(휴식시간): 고장점수요원(SLMOS/LCR전당 요원) 삭제

<해설>

1) 고장점수 업무는 100번 센터 협력업체의 업무로 전환되어 해당 조합원 미발생

마. 청원휴가 변경

1) 교통불편 원격지 2일 → 선박으로만 이동 가능한 도서지역은 2일

<해설>

KTX 열차 등 1일 생활권이 가능한 현대사회에 교통불편 원격지 개념은 모호하며 섬이라도 교량개통으로 1일 도착 가능

2) 출신지 배우자처: 1일 → 배우자 출신지: 3일

<해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 악기, 출산장려를 위해 1일 청원 휴가를 3일 확대

3) 회갑 또는 칠순 2일 → 1일 축소

<해설>

조합원들의 회갑 또는 칠순 친지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로 시행되며 최근 주5일을 감안하여 금요일에 행사하는 경향이 증대

4) 영구불임시술 3일 → 삭제

<해설>

동아시아텔레콤노동조합 포럼

한국, 일본, 대만의 통신노동조합 기술혁신과 고용변화에 대한 토론



한국, 일본, 대만의 통신노조는 26일부터 열린 제3차 동아시아텔레콤노조 포럼에서 기술혁신과 고용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면서 28일 막을 내렸다.

NTT노조 모리시마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향후 IT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울

로 소상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통신노동자들의 고용확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국 노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만 청화텔레콤 노조의 민영화 반대부쟁 그리고 KT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노력에 대하여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 지재식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등 유사한 통신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당면한 현안 문제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발전과 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이 포럼은 의미가 있으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토론에서 3국 노동조합은 ▲초고속 인터넷 발전과 고용변화(한국) ▲민영화 고용,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일본) ▲기술혁신 및 당면한 노동자의 고용(대만) 등의 주제발표를 하고 각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토론 후 3국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VoIP, FMC,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QuadroPlay Service 등 통신부문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과 기술습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텔레콤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국가, 행정, 기업에 대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텔레콤 노동자를 위한 기술향상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대표적인 반노동자적 정책으로 과거근로와 도급 등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시키고 노동환경 및 노사관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절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06년 제4회 포럼은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시기 및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KT노동조합에 일임키로 했으며 차기 대회부터는 포럼참가자에 대한 여성비율을 검토키로 했다.



UNI세계총회, 양질의 고용요구

지재식위원장은 8월22일부터 25일간 미국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제2차 UNI세계총회에 참석했다.

전세계 가맹노조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UNI 세계총회에 한국에서는 사무급운영맹, 민간서비스연맹, 금융노조, 체신노조, 정보통신노조, SKT노조 등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세 가지 큰 틀에서의 행동계획인 '양질의 고용을 요구하는 UNI행동계획', '글로벌 유니언 노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행동계획', '글로벌 유니언 노동조합 권리를 요구하는 UNI행동계획'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화 등 18개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 150개국의 150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규합하고 있는 국제노조네트워크(UNI)는 세계 최대의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무노조 경영을 깨기 위한 전략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는 세계집행위원회와 임원선출을 끝으로 8월 25일 폐막되었으며 다음 제3차 세계총회는 2010년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1월 총파업 투쟁 전개할 것 비정규 입법,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 쟁취 등 투쟁목표 확정



주노총 실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준비하는 구실을 밟도록 했다.

세부 투쟁일정으로는 △9월28일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전국노동자대회(권역별) △10월10~15일 덤프, 레미콘, 불법파견 사업장 등 비정규 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집중투쟁주간 △10월16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 △10월19~20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 등을 진행키로 했으며, 민주노총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치르기로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투쟁을 위해 11월17~18일 아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부시방한 저지 투쟁 등도 펼치게 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조직혁신위를 중심으로 혁신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산별특위 설치를 승인했다. 다만 여러 가지 논의된 문제는 의결단위별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혁신위는 더 책임 있게 혁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이밖에 △교육공공성강화, 교원평가 반대, 무상교육 쟁취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 즉각 철회 △화물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생존권 쟁취, 제도개선, 노동기본권쟁취 총력투쟁 △주)크라운제과 전제품 불매투쟁 등 활동 등의 특별결의문도 채택됐다.

대의원들은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을 채택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저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 △11월 아pec 반대 총력대응 △조직내부 혁신운동 전개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회계감사 총평 “행정처리 잘됐다”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김진옥)는 9일 총평을 끝으로 2005년 상반기 회계감사 일정을 마쳤다.

김진옥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행정처리가 잘되어 있었으며 환수도 전부 여입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 사항 중 일부 시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환수8건 ▲행정지도 8건 등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5차례 회계감사활동을 해오면서 현집행부가 재정부분은 청렴하게 집행한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관련

지난 해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부터 단계별 촉진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단계에서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회사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후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께서 1단계에서 시기를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소속 지부장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10.1~12.31(3개월간)

나. 대상 : 휴직, 교육파견 등의 사유를 제외한 전직원

다. 일정

○ 1단계 (10.4) : 미사용휴가 시기지정 서면촉구 (회사→직원)

○ 2단계 (10.14) : 사용시기 지정통보(직원→회사)

- 통보서 작성, 제출 및 복무전산 휴가신청 (*결재 승인)

○ 3단계 (10.17) : 미제출시 사용시기 지정 통보 (회사→직원)

- 복무전산 휴가신청 (*결재 승인)

○ 4단계 (10.17~) : 휴가지정일 출근시

- 근로제공 거부(명확한 의사 표시 요함)

2005년 동계유니폼 착용시기 변경

2005년 9월 1일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급대상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05년 동계유니폼의 착용시기가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불편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유니폼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사유

- 조직개편(9.1)으로 지사와 고객서비스센터가 지사로 통합, 조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변동사항 발생
- . 업영조직, 고객서비스 조직간 전출입에 따른 인사이동
- . 고객서비스조직내 부서 및 직무 이동 등
- 이로인해 지급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재조사하고, 이에 맞춰 유니폼 제작물량을 조정함에 따라 지급일정 지연 불가피

▶동계유니폼 착용시기 조정 : 2005.10.4 → 10.10